

의안번호	제588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5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12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8
----------	-----

제출연월일 : 2013. 12.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2011. 7. 29.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되고,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개정·신설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2조)
- 1) 제2조제1항의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제2조제1항제1호의 외부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나.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3조)
- 1) 제3조제1항제3호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
 - 취업심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취급 제한 및 승인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5. ~ 2013. 11. 4.)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9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인”을 “7명”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인”을 “4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항 제1호의 5인중에서”를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로, 같은 항 제2호 중 “전항 제2호의 4인중에서”를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제4조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7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u>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u>9인</u>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5인</u>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u>자</u>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u>자</u></p> <p>2. <u>4인</u>의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 2명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u>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u>전항 제1호의 5인중</u>에서 선임</p> <p>2. 부위원장은 <u>전항 제2호의 4인중</u>에서 선임</p> <p>③ <u>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u>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1조(목적)----- 「<u>공직자윤리법</u>」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u>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u>-----</p> <p>-----</p> <p>-----</p> <p>-----</p> <p>제2조(구성) ① <u>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p> <p>-----<u>1명</u>-----<u>11명</u>-----</p> <p>-----</p> <p>-----</p> <p>1. <u>7명</u>-----</p> <p>-----<u>사람</u>-----</p> <p>-----</p> <p>-----<u>사람</u>-----</p> <p>2. <u>4명</u>-----</p> <p>-----</p> <p>-----</p> <p>② -----</p> <p>-----<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u>-----</p> <p>-----</p> <p>1. -----<u>제1항제1호의 7명</u> 중 에서 -----</p> <p>2.-----<u>제1항제2호의 4명</u> 중 에서 -----</p> <p>③ <u>제1항제2호에 따라</u>-----</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생략)</p> <p>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기능)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p> <p>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2. (생략)</p> <p>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p> <p>4.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제8조제7항에 따른----- -----제8조제12항에 따른-----</p> <p>2. (현행과 같음)</p> <p>3. -----제22조에 따른-----</p> <p>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p>1. (생략)</p> <p>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u>자와</u> 관계 있는 사항</p> <p>3. (생략)</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⑤ (생략)</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사람과</u> ----- -----</p> <p>3.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 따라</u>----- ----- ----- -----.</p> <p>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9]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